

경북 지역의 근대 혼례의 변화

- 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중심으로 -

김 홍 구*

Ⅰ 국문초록 Ⅰ

우리의 역사는 무궁한 세월을 흘러오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를 진행해 왔다. 그중 근대 시기는 현대와 고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특히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와 문물이 존속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선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행해지지 않는 성인이 되기 위한 성인식인 관례(冠禮)가 마지막으로 행해졌다.

우리의 문화와 문물이 다양하게 변화를 거쳐오면서 그 중 여전히 고수하여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가 존재한다. 우리 삶과 가장 친밀하고 직결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혼례(婚禮)이다. 근대의 시기에는 신식 혼인이 성행하기 전 마지막 구식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혼례도 서구의 문화 유입으로 서구식의 혼례가 정착되었다.

혼인(婚姻)은 사회적으로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고 법률적으로 남녀가 부부관계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혼례는 혼인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그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며, 혼인 당사자에게 있어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써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근대 혼례의 경우는 혼인 연령은 혼처를 구하는 대상을 포함하면 남자는 14.4세이고 여자는 13.3세이다. 남자는 16세부터 30세까지, 여자는 14세부터 20세에 혼인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일반적인 형태에 비해서는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연도는 혼인을 금지했던 1900년 이전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혼인이 진행되었고, 동학 교도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1894년에는 혼인을 간소하게 치르기도 하였다.

혼례의 형태는 고대 시기부터 서구의 유입으로 신식 결혼이 진행된 시기 전까지 서류부가혼(瑣留婦家婚)의 형태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부터 친영(親迎)을 주장하여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라는 새로운 친영의 사례가 도입되었다. 조선 후기까지 가관친영례가 진행되었고, 190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고례(古禮)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신행(新行)의 시기가 빨라지고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됨에 이르렀다.

[주제어] 근대, 혼례(婚禮), 관례(冠禮), 친영(親迎), 신행(新行), 서류부가혼(瑣留婦家婚),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

*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shawnman82.hanmail.net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Ⅲ. 경북 지역의 근대 혼례의 변화 |
| Ⅱ. 이종구가 5대 고문서 내의 혼례 실태 | Ⅳ. 나가는 말 |

I. 머리말

우리의 역사는 무궁한 세월을 흘러오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를 진행해 왔다. 그중 근대 시기는 현대와 고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특히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와 문물이 존속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선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행해지지 않는 성인이 되기 위한 성인식인 관례가 마지막으로 행해졌다.

우리의 문화와 문물이 다양하게 변화를 거쳐오면서 그 중 여전히 고수하여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가 존재한다. 우리 삶과 가장 친밀하고 직결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혼례(婚禮)이다. 근대의 시기에는 신식 혼인이 성행하기 전 마지막 구식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혼례도 서구의 문화 유입으로 서구식의 혼례가 정착되었다.

혼인(婚姻)은 사회적으로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고 법률적으로 남녀가 부부관계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혼례는 혼인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그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며, 혼인 당사자에게 있어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써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고대 혼례는 먼저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에서부터 출발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婿屋)’이라 부른다.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신부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청한다.”는 기록이 있다.¹⁾ 이것은 데릴사위제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신랑이 장인 집에 들어가 산다는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제도인 것이다.

부여의 혼례 풍속 중에 형사처수(兄死妻嫂)라는 제도가 있었다. 『삼국지』 「위서(魏志) · 동이전(東夷傳)」 부여조(扶餘條)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었다. 이러한 풍속은 부여의 계통을 이은 고구려에 전수되었다. 형사처수는 강력한 종족 보존욕과 친족 구성원 간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원시 고대 사회의 혼인 풍속으로 고구려 사회 전반에 널리 행해진 풍속이라 할 수 있다.²⁾

백제의 혼례 풍속은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 백제조(百濟條)에 “혼례는 중국과 같다.”라는 기록이 있다.³⁾ 하지만 고구려와 밀접한 지역에 있었고, 문화 역시 이질적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서류부가혼(婿

1)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 乞得就女宿.”라고 되어 있다.

2) 박용옥, 「고구려의 혼인 풍속과 평강공주의 자매(自媒)혼인과 그 역사적 성격」, 『이대사원(梨大史苑)』, 2003, 54-55쪽.

留婦家婚)일 가능성이 높다. 신라의 혼례 풍속은 아들과 딸 또는 친손과 외손의 차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같은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었다.⁴⁾

고려시대에도 서류부가혼의 풍속이 삼국시대를 이어 계속해서 전해졌다. 고려왕실에서는 근친혼과 정략혼이 행해졌는데, 왕권강화의 목적이 있었다. 고려시대는 전기까지는 일부일처혼을 유지하였다가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다처사회였던 원나라의 영향으로 인해 고려 사회 내에 일부다처혼이 많아졌다.⁵⁾

조선시대 초기에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주자의 『주자가례』에 따른 의례로 변화시키려고 매진하였고, 전통적인 남귀여가혼 대신 친영혼을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친영제를 처음 도입한 임금은 태종이다. 태종은 친영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다.⁶⁾ 이후 세종과 중종 대에 이르러서 친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왕실에서만 친영이 시행되었고, 사서인의 친영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⁷⁾

명종 대에 이르러 완전한 형태의 친영혼은 아니지만 ‘반친영(半親迎)’이 시행되었다. 반친영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되, 삼일째 행하던 삼일상견례(三日相見禮)를 당일에 시행하는 당일상견례(當日相見禮)로 바꾸고, 다음날에 신부모를 뵙는 명일현고구례(明日見舅姑禮)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혼례 후 일정 기간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명일현고구례가 시행되기 어려워 당일상견례만 시행되었다. 서류부가혼의 변형 형태인 신속례(新俗禮)라는 새로운 속례가 성립되었다.⁸⁾

16세기 예학의 발달과 함께 친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친영제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⁹⁾라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 가관친영례는 처가의 가까운 곳에 관소를 마련한 뒤, 혼례 하루 전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관소에 와서 머물고, 다음날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관소로 돌아와 합근(合簪)을 행한 뒤 다음날 아침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를 뵙고 폐백을 드리는 형식을 말한다. 하지만 혼례의 절차가 마쳐진 뒤, 신부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였다. 그러므로 가관친영례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혼례와 관련된 연구 중, 혼례 형태와 관련된 연구는 몇 차례 진행되어왔다. 주로 한 시기를 대상으로 그 시기의 혼례 방식이나 형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병인은 조선 중기 사대부 가의 혼례 형태 중 가관친영을 중심으로 가관친영의 시행 시기, 절차, 문제점을 연구하였고, 조선 건국 이래 친영제를 시행하

3)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 백제조(百濟條), “婚娶之禮, 略同於華.”

4) 권순환, 「고려시대 혼인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6쪽 참조.

5) 이장란, 「고려시대 혼인형태에 대한 재검토」, 『사학』 57, 2003, 23쪽.

6) 『태종실록』 15년 1415년 1월 15일에 예조에서 복제(服制) 건으로 계문을 올리자, 태종은 이를 윤허하고, 예조에 명하여 친영(親迎)하는 예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상정하여 아뢰었지만, 그 일이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7) 장병인,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조선시대학보사』 45, 2008, 256쪽.

8) 장병인, 위의 논문, 2008, 256쪽.

9) 가관친영례(假館親迎禮)는 정자(程子)가 처음 언급하였다. 정자는 서로 다른 나라끼리는 국경을 넘어서 혼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관사(館舍)를 설치하여 친영의 예를 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자는 정자의 가관친영례에 대한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이에 관해 설명하였다. 주자는 “친영의 예는, 가까우면 그 나라에서 맞이하고, 멀면 그 관사(館舍)에서 맞이한다. [親迎之禮, 近則迎於其國, 遠則迎於其館.]”라고 하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신부집 근처에 신랑집을 대신할 관소를 마련하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 관소(신랑집)에 와서 혼례를 치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신랑집 근처에 신부집을 대신할 관소를 마련하고 신랑이 관소(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신랑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려는 노력은 조선 중기에도 시행되었으나 끝내 실패하였다고 보았다.¹⁰⁾ 조선 후기에는 친영제가 일반화되었다는 종래의 잘못된 이해를 시정하고 조선 후기에는 신속제가 성행하였다고 밝혔다.¹¹⁾ 한복용은 술서혼속(率婿婚俗)의 내용을 밝히고 중국의 가취제도(嫁娶制度)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왕실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한 친영제의 모습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¹²⁾

송민선은 조선 시기 혼례의 행례 구성과 특징에 대해 친영과 반친영, 남귀여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적 관점에서의 의미 등을 일제강점기와 ‘일생의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자료로 고찰하였다.¹³⁾ 김정운은 17세기 경상도 사족들의 일기를 통해 혼례 방식에 대한 실상을 조사하였다. 17세기 사족들은 초례를 엄격하게 시행하였고, 혼례에서 교배례를 중시한 사실을 밝혔다.¹⁴⁾

본 연구는 경북의 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혼례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경북 지역의 혼례 형태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조선 성리학의 기반을 닦았으며 조선 중기 사림 정치의 정착에 기여하고 경주 양동지방에 활동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집안의 고문서이다.

이 고문서의 명칭은 ‘이중구가 5대 고문서’라고 지칭한다. 이 자료는 이중구(李中久, 1851~1925)를 중심으로 조부 이재립(李在立, 1798~1853), 부친 이능덕(李能德, 1826~1861), 아들 이석일(李錫日, 1886~1950), 손자 이인원(李寅源, 1923~?)에 이르는 5대에 걸쳐 산출된 고문서를 모은 것이다. 이들은 여강 이씨이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중구가 5대 고문서는 이중구 집안에서 소장해온 8천여 점의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모은 것이며,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당시의 다양한 민간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¹⁵⁾ 한 가문이 100여 년 동안 집안의 모든 문서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료의 질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중구가 5대 고문서 8,000여 건의 자료 중에, 간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간찰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식과 안부 등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활의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와 사회,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민간생활사의 기본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예식을 들 수 있다. 예식 중에도 삶,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례(四禮)이다. 우리의 삶은 한 가정의 탄생으로 출발한다. 혼례와 관련된 자료는 민간생활사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는 혼례와 관련된 자료가 총 400여 건이 된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는 혼례 관련 연

10) 장병인, 앞의 논문, 2008.

11) 장병인,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한국사연구』 169, 2015.

12) 한복용, 「조선시대 친영제도의 전개과정」, 『중앙법학』 9, 2007.

13) 송민선, 「친영과 반친영의 문화적含意」, 『역사민속학』 37,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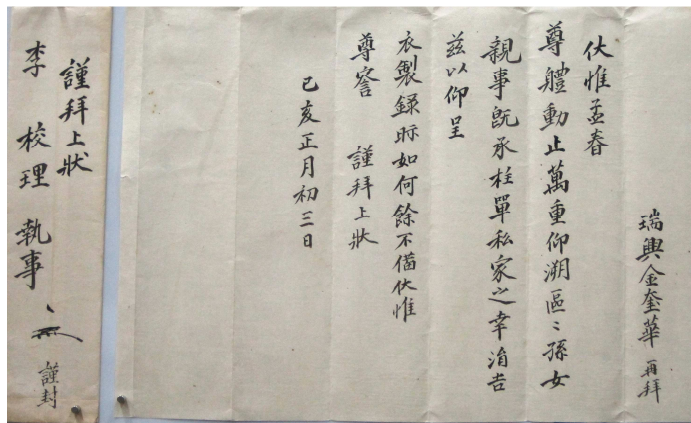
14)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韓國思想史學』 56, 2017.

15) 이재령은 근대이행기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향촌 지식인들 사이에 오고 간 간찰과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 중앙과 지방 사회의 변모 양상을 낱알이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며 국내문제와 대외문제의 현실 인식의 양상, 향촌 지식인의 공공활동, 서원 및 개인의 학문활동, 전통문화와 관습, 관혼상제 등을 밝혔다. 이재령, 「경주 이중구가 고문서 자료의 정리와 성과」, 『동양학』 83, 2021, 22~23쪽 참조.

구를 하기에 적합하고, 자료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중구가 5대 고문서 자료를 통해 경북 지방의 근대 혼례의 변화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자 한다.

Ⅱ. 이중구가 5대 고문서 내의 혼례 실태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 보이는 혼례와 관련된 한 장의 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 이중구가 5대 고문서 혼서장(婚書狀)

위의 편지는 혼례에서 양가가 혼인날을 정하기 위해 보내는 연길혼서장(涓吉婚書狀)이다. 이 혼서장은 1899년 1월 3일에 신부 측 대표 김규화(金奎華)가 신랑 측 대표 이중구에게 보낸 것으로, 김규화의 손녀와 이중구의 아들 이석일이 혼인을 맺기 위해서였다. 왼쪽에는 피봉이 있는데, 피봉에는 수신자의 이름인 이 교리(이중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오른쪽 끝머리에는 발신자의 이름인 김규화가 기록되어 있다. 문서 분류로는 간찰류에 속하지만, 의례와 관련된 형식적인 글이므로 일반 편지의 자유로운 필체와는 다르게 정자로 정서되었음을 볼 수 있다.

1. 혼례 용어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는 혼례를 호칭하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혼례의 용어로는 무을(撫栗), 우귀(于歸), 우례(于禮), 불하지하(不賀之賀), 거할(車輦), 초(醺), 혼(婚)으로 다양한 혼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을은 시부모가 며느리를 맞아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현구고례(見舅姑禮)를 말하는 것이다. 현

구고례는 신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를 뵈고 폐백을 드리면 시부모가 술을 따라주는 혼례 예식을 말한다.¹⁶⁾

우귀는 『시경(詩經)』 「주남(周南) · 도요(桃夭)」에 “싱싱한 복숭아나무에 화사하게 꽃 피었네. 우리 아가 씨 시집가서 온 집안 화락케 하리로다.[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라는 구절에 ‘시집가대(于歸)’에서 나왔다. 우리는 또한 우귀례(于歸禮)의 준말로 우귀와 같은 연원이다.

불하지하는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혼례에 하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의 차서(次序)를 잇는 것이기 때문이다.[昏禮不賀 人之序也]”라고 하였다. 하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례에 물품을 보내어 축하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차서를 잇는다는 것은 혼례를 통해 집안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예 드러내 놓고 축하하고 즐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거할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주로 덕행이 높은 고인을 흠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시는 주자(朱子)가 주에서 밝혔듯이 신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燕樂其新昏之詩]로 혼례에 친영하는 모습을 시로 읊조린 것이다. 초는 혼례의 한 의식으로 납채(納采) · 문명(問名) · 납길(納吉) · 납징(納徵) · 청기(請期) · 친영(親迎) 중 친영에 속한다. 『가례(家禮)』를 참고해보면, 신랑이 신부를 친영하기 위해 신부집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신부집에서는 신부가 대례청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딸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다.¹⁷⁾

2. 혼례 연령

혼례는 남자는 관례를 올리고 난 뒤, 여자는 계례를 올리고 난 뒤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례와 계례를 올려야만 성인의 자격이 주어져 성혼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기』 「내칙(內則)」에는 남자는 20세가 되면 관례(冠禮)를 행하고[二十而冠], 30세에 아내를 둔다[三十而有室]고 하였고, 여자는 10세에 계례를 올리고[十有五年而笄] 20세에 시집을 간다[二十而嫁]고 하였다. 30세와 20세는 극한(極限)을 두고 논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연령에 결혼을 올리는 것이 아니었다.¹⁸⁾ 『가례』 「혼례(昏禮)」에 “남자는 나이가 16세부터 30세까지, 여자는 나이가 14세부터 20세까지 혼례를 치를 수 있다[男子年十六至三十, 女子年十四至二十].”라고 하였고, 상변통고(常變通攷)에는 “지금의 법령 조문에는 남자는 15세, 여자는 13세 이상이면 모두 혼인하여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당시 조선 시대에는 남자 15세, 여자 13세 이상이면 혼인을 치렀던 것으로 보인다.

16) 『예기(禮記)』 「곡례(曲禮)」에는 여기에서 신부가 시부모께 드리는 폐백으로 석리(石李), 개암(棗), 포(脯), 수(脩), 대추, 밤이 있다고 하였다.

17) 『가례』 「親迎 · 遂醮其子而命之迎」

18)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와 관련하여 주(周)나라 애공(哀公)과 공자(孔子)의 물음이 존재한다. 애공이 공자에게 “예기(禮記)에 남자는 30세에 아내를 두고 여자는 20세에 남편을 둔다고 하는데, 늦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가 “대체로 예란 그 극한(極限)을 두고 말한 것이니 그때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행하니 아버지가 되는 단서가 있고, 여자는 15세에 출가를 허락하니 남에게 시집가는 도리가 있습니다[公曰, 禮男子三十而有室, 女子二十而有夫也. 豈不晚哉. 孔子曰, 夫禮, 言其極, 不是過也. 男子二十而冠, 有爲人父之端, 女子十五許嫁, 有適人之道].”라고 대답하였다.

이증구가 5대 고문서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혼례를 올린 남자 연령은 12세이다.¹⁹⁾ 이증구의 아들 이석일(李錫日)은 14세 때에 올렸고, 이석일의 아들 이인원(李寅源)은 18세에 올렸다. 가장 이른 시기에 혼례를 올린 여자 연령은 14세이다.²⁰⁾ 조선후기에서 구한말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조선 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전승되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1750년 이후 혼례의 평균연령은 16.5세였다.²¹⁾ 이증구가 5대 고문서에서는 평균연령이 남자는 14.6세, 여자는 13.3으로 기존 연구보다는 빠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까닭은 혼처를 구하는 대상자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한 간찰에는 자제의 연령이 이제 겨우 15세가 되었으니 일 년을 늦추어 올려도 늦지 않다(允玉纔及成童一年退行 亦爲未晩).²²⁾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에는 15세에 혼인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5세라는 연령이 이른 나이라는 인식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이증구가 5대 고문서 혼례 실태 조사표 1

시기	혼례인	혼례 연령	비고
1854	김진형(金鎭衡)의 둘째 딸	12세	구혼
1876	김윤모(金潤模)의 아우	15세	구혼
1899	손효영(孫孝永)의 예비사위	16세	혼인 예정
1899	이석일	14세	혼인(婚姻)
1919	박재창(朴在昌)의 친척	14세	구혼(求婚) ²³⁾
1919	이증구 손서(孫瑤)	12세	혼인
1937	이교우(李敎愚)의 딸	16세	구혼
미상	○○의 증손녀	12세	구혼
미상	○정희(○廷熙)의 죽인	17세	구혼

3. 혼례 시기

이증구가 5대 고문서에서 당시 혼례를 올린 날짜가 기록된 편지가 무수히 보인다. 이를 토대로 당시 혼례를 올린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혼례의 시기를 알게 된다면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혼례를 올린 시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이증구가 5대 고문서』, C226, “규라는 손녀의 혼인이 지금 명윤의 손자에게 시집가기로 정해졌는데, 신랑될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준수하고 명민하며 나이는 12세이다(圭孫之婚, 今行定于明允令孫, 郎才極俊秀明敏, 而年十二矣).”

20) 위의 책, F403, “오직 신부의 나이는 14세의 아이이다(惟新婦十四歲兒).

21) 송미화, 「조선 중기 이후 영남지역 관례의 구성 체계와 그 문화적 의미 변화」,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1.

22) 앞의 책, F022.

23) 구혼(求婚)은 혼인할 대상을 물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이충구가 5대 고문서 혼례 실태 조사표 2

연도	혼례일	혼례인	비고
1861	1월	미상	예정
1867	10월 초	김종수(金宗壽)의 자식	예정
1894	11월 내	이교명(李敎明)의 아들	예정
1898	봄	손효영(孫孝永)의 아들	예정
1899	1월 4일	김규화(金奎華) 작은 집	
1899	가을	이교승(李敎承)의 아우	예정
1899	10월 15일~12월 27일 사이	이석일	
1899	12월 17일	김건동(金建東)의 딸	
1900	1월 24일	미상	
1901	1월 28일	이교명(李敎明)의 누이	
1902	1월과 2월 사이	미상	예정
1903	10월 6일	손병식(孫秉軾) 아우	
1904	3월 12일	김규화(金奎華)의 손자	
1904	4월 12일	김규화(金奎華)의 손자	
1904	4월 24일	김규화(金奎華)의 증손녀	
1909	4월 6일	김규화(金奎華)의 손자	
미상	6월 6일	김진하(金鎭河)	
미상	1월	김면동(金冕東) 집안 사람	연기
미상	10월 3일	김희주(金熙周)의 둘째 딸	
미상	4월	이지호(李之鎬)	예정
미상	9월 말~10월 초	진상(晉祥)의 아들	
미상	10월 27일	미상	
미상	10월	미상	연기
미상	10월 초	미상	연기
미상	3월 12일	미상	
미상	1월 그믐날	미상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월에서 4월 사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혼례가 치러진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농업이 주를 이루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 9월은 혼례일로 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당시 사회상이나 집안 문제 등으로 혼인 시기가 결정되었다.

당시 정세와 관련되어 혼인 시기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1900년 최시교(崔嵒敎)의 간찰에서는 현재 혼인을 금지하던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혼인을 금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친족끼리는 동일한 계절에 혼례를 치르지 않기도 하였다.²⁴⁾ 이중구의 사종형四從兄 아들 표表의 혼인이 겨울에 있어서, 명(明)이라는 인물의 혼례는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였다. ‘표’와 ‘명’의 자세한 친족관계는 알 수 없지만 8촌의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 가까운 시기에 친족간의 혼례를 올리지 못한 규정이 존재한 것이다.

4. 이중구가 5대 고문서 혼례 자료 내용

혼례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는 전체 8,000여 건에서 400여 건이 된다. 이 400여 건의 편지에서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면 내용이 다른 편지는 총 24건이다. 그 내용은 주로 서로 간의 혼담을 나누는 혼서지의 형태가 있고, 혼례에 대한 축하와 혼수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혼처를 부탁하는 내용과 혼례 일정, 혼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이중구가 5대 고문서 혼례 실태 조사표 3

순번	혼례 자료의 내용
1	이미 정한 혼례일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
2	혼례 준비가 미비하다며 혼례 연기를 제안함
3	혼례를 치르지 않은 자식을 걱정하는 내용
4	상대의 혼례를 축하하는 내용
5	동학의 난리로 혼례를 간소하게 치름
6	상대의 혼인 준비를 걱정하는 내용
7	혼처를 부탁하는 내용
8	정혼처에 성인이 되어 혼인을 치르자고 함
9	혼례일을 앞두고 혼수품을 구하지 못해 걱정함
10	좋은 혼처를 놓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
11	혼수물품을 기록해 놓은 문서
12	혼인 축의금을 마련한다는 내용
13	신행(新行)일을 결정하는 내용

24) 앞의 책, G191, “명이의 혼례는 처음에는 겨울 안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표의 혼인이 겨울 내에 있어서 명이의 혼례는 부득이하게 내년 봄으로 미뤄서 올려야 합니다(明兒婚, 初擬冬內矣. 以表兒婚, 在冬內, 故兒婚, 不得已以明春退行)”; 앞의 책, C226, “이해 내에 혼례를 치러야 하지만 이 집안에서 일 년에 두 번 혼례를 치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혼례를 치르기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當歲內成禮, 而此家忌一年兩婚, 故以明春成禮, 斷斷相約耳.)”

순번	혼례 자료의 내용
14	혼례 참석을 위한 가마 등을 빌리는 내용
15	개인 사정으로 혼례일에 참석할 수 없음
16	상대에게 혼례가 잘 마무리되었는지를 물음
17	사주단자를 받고 혼례일을 정하는 내용
18	혼례에 참석해준 것에 대한 답례 인사
19	상대에게 혼례일에 참석을 요청함
20	혼례를 위해 혼례 도구를 빌리는 내용
21	혼례일을 정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
22	혼례를 금지했던 조치가 풀렸다는 내용
23	혼례의 제반사항에 대해 알리는 내용
24	신행에서 반정(半程)을 알리는 내용
25	상례를 치르고 곧바로 혼례를 올려야 하는 어려움
26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례를 올리는 내용
27	종제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즉시 혼례를 올린 내용
28	신행(新行) 날을 택일하는 내용
29	원행(遠行)으로 혼치를 거절한 내용
30	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혼사를 지체하는 내용
31	혼사를 맺기로 한 집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내용
32	장례로 인해 혼사를 연기한 내용
33	신행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준비가 미비하였다는 내용
34	혼인에 부조금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

앞서 언급한 혼례 주요 내용 이외에는 시대상의 혼란으로 혼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있었고, 혼수물품을 기록해 놓은 목록도 존재했다.²⁵⁾ 그중 혼수물품이 기록된 기록물은 당시에 혼인할 때 필요한 혼수물품

25) 앞의 책, E591에는 혼수품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록모초(草綠毛絢) 상의 7냥, 송화고단(松花古丹) 상의 11냥, 월문홍갑사(月紋紅甲紗) 하의 50냥, 화문청갑사(花紋靑甲紗) 하의 50냥, 화색고단(火色古丹) 상의 10냥, 분홍모초(粉紅毛絢) 상의 7냥, 초록장원주(草綠壯元紬) 상의 4냥 5전, 백갑(白甲) 상의 7냥, 옥색여의사(玉色如意紗) 상의 4전 8전, 양색고단(兩色古丹) 상의 11냥, 양색증(兩色絢) 상의 3냥 6전, 옥색가증(玉色加絢) 상의 4전, 백삼팔주(白三八紬) 상의 4전, 홍색여의사(紅色如意紗) 상의 , 옥한단(玉漢丹) 하의 6냥, 혼함(婚函) 1좌에 11냥, 함경(函鏡) 1좌에 7냥, 명주(明紬) 1필에 24냥, 당혜(唐鞋) 1필에 24냥, 인도(引刀)와 전도(剪刀)는 도합 1냥 5전, 초립(草笠) 6냥, 낭대(郎帶) 1냥 5전, 관영(官纓) 1냥, 어선(魚旋) 30척에 3냥, 낭서(囊絰) 3개에 1냥 5전, 대발승(大髮繩) 1냥, 공단귀미개(孔丹貴味開) 3에 7전, 세침(細針), 중침(中針) 10봉에 1냥 5전, 색사(色絲)와 금향고단토수(錦香古丹吐手) 2, 옥색길상사토수(玉色吉常紗吐手) 1냥, 초록길상사토수(草綠吉常紗吐手) 1냥, 한포단요대구단임(漢布丹腰帶具丹任) 2냥, 망건서이거리(網巾緒) 2거리(二巨里)에 5전, 고단정재(古丹井才), 백지포(白苧布) 90척에 36냥, 함경소입(函鏡所入) 1냥 5전, 여소(女梳) 1전 1푼, 장룡(藏龍) 55냥.

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당시의 물품의 값을 통한 물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어른들 간에 자식의 혼인을 약속하고도 자녀들이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성년이 될 때를 기다려 혼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²⁶⁾ 당시 어린 시절에 미리 정혼한 실제 사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혼처를 구하는 사례의 편지들이 여러 차례 보인다. 이는 당시에 중매혼이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혼처를 구하는 사례 중, 중매인이 제안한 혼처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이유는 거리가 먼 집안과는 연속으로 혼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⁷⁾ 당시에 거리가 먼 집안과는 혼인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상·장례는 죽음으로 인한 관계성의 단절로 산 사람이 애도의 감정을 겪는 예식이다. 이에 반해 혼례는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경사스러운 하례이다. 이 두 예식은 서로 상반되는 의식인데, 간혹 이 두 예식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선행된 예식에 초점을 두고 후에 있을 예식은 연기하였다.²⁸⁾

한 편지에서는 혼인과 신행을 달을 이어 치러야 했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한 사례가 있다.²⁹⁾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혼례에 드는 제반 비용들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 집안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려면, 크게 혼인과 신행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면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Ⅲ. 경북 지역의 근대 혼례의 변화

1. 단축되는 신행일

이전 시기에는 사대부에서는 『가례』의 방식에 따라 친영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아와 당일 자신의 집에서 대례를 올리고 다음날에 현고구례를 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친영은 조선 시대에 유교 도입과 함께 여러 차례 시도하여 사대부가에서는 속례(삼일삼견례)에서 진친영의 한 형태인 신속례(新俗禮)로 변화되었고, 신랑과 신부가 하루 만에 왕래하기 어려운 거리 문제로 가관친영(假官親迎)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었다.

경북 지역의 근대 혼례는 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친영의 대안인 가관친영이나 진친영(眞親迎)은 행해지지 않고, 서류부가혼의 속례(俗禮)가 지속되었다. 이는 조선 중기에 친영을 주장했던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등 충청 지역에서 활동한 서인 계열과는 별개로 경북 지역에서는 친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는 이 시기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26) 앞의 책, F556.

27) 앞의 책, C072.

28) 앞의 책, G545.

29) 앞의 책, C348.

하지만 이 시기에는 기존의 속례를 유지하였지만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신행(新行)의 날짜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기존 속례에서 신행, 즉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현고구례(見姑舅禮)는 그 기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몇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시기에는 빠르면 4일, 늦어도 그해에는 신행을 하게 된다.³⁰⁾

신행의 일자가 다가왔다고 할 만하니, 모든 물품에 혹 군색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요? 청빈함으로 자처하지 말고 성대하고 풍성히 마련해서 한바탕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우습고 우습습니다.³¹⁾

위의 간찰은 1899년 겨울에 장조우(蔣祖禹)가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중구의 아들 이석일이 겨울 10월 15일에서 12월 사이에 혼인을 치르는데, 이 편지는 이보다 앞서 보낸 편지로 10월쯤으로 예상한다. 이중구의 아들 이석일은 김면동(金冕東)의 딸이자 김규화의 손녀딸인 서흥(瑞興) 김씨와 혼인을 맺게 된다. 이후에 김면동과 서흥 김씨는 신행을 위해서 이중구가 살고 있는 경주 양동지역으로 신행하게 된다. 김면동의 딸이 살던 곳은 창원으로 창원에서 경주로 신행길을 떠난 것이다.

신부가 신랑집 즉, 시가(娉家)에 온 이후로는 시가에서 살면서 정착하게 된다. 이후에 신부는 친정 부모를 뵙기 위해 근친(覲親)을 하게 된다.

손녀의 혼인은 순조롭게 행해졌는데, 범절이 기대에 꼭 맞았으니, 이는 한바탕 즐거운 일이고, 사위는 재행(再行)할 때 보니 영특하고 명철하여 몹시 사랑스러웠습니다.³²⁾

위의 간찰은 김규화(金奎華)가 손녀의 시아버지 이중구(李中久)에게 보낸 편지이다. 김규화와 이중구는 사돈지간으로 앞서 언급한 김면동의 부친이 바로 김규화이다. 여기에서 재행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가례』에서도 재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재행이라는 용어는 혼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규화의 손녀 서흥 김씨와 이중구의 아들 이석일은 1899년 12월 겨울쯤에 혼례를 치렀는데, 이 용어가 사용된 해는 1910년 3월 2일이다. 그렇다면 혼인을 치르고 3개월 뒤에 재행한 것이다. 위의 간찰 ‘사위는 재행할 때 보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행이라는 용어는 사위 즉, 신랑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다.³³⁾

30) 장병인, 앞의 논문, 2008, 239쪽에는 현고구례(신행)의 시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서 명종, 중종 시기, 이후 인조 때까지는 현고구례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기약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친영을 시행한 소수사대부들만 상견례 다음날로 특정하였다.

31) 앞의 책, H387, “新行日子, 可謂迫頭, 凡具或無窘碍否. 勿以清寒自居. 大辦豐備, 以修一場盛會, 如何? 仰呵仰呵.”

32) 앞의 책, G652, “孫女婚利行, 而凡節滿望, 此可爲一沉, 郎則因再行, 穎悟詳明, 可愛可愛.”

33) 재행의 용어는 진성 이씨의 집성촌인 하동의 혼례를 기록해 놓은 『하동혼례(霞洞婚禮)』에서는 인재행(因再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인재행은 친영의 한 의절로 소개하고 있다. 신랑이 신부집에 온 지 삼 일째 되는 날에 처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고, 나흘째 되는 날에 돌아가는 것을 인재행이라고 하였다. 결국 처가를 두 번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재행이라고 불린 것이다. 이동후, 『하동혼례(霞洞婚禮)』, 150쪽.

재행은 예이네. 우리 쪽에서 말을 보내는 일은 온 세상이 똑같이 하는 일일세. 그런데 우리 집 말이 신행길에 갔다가 그대 집에서 돌아온 뒤 절뚝거리는 것이 점점 심해져 전혀 다시 보낼 처지가 못 되네. 게다가 우리 고을의 수령이 부모를 모시러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떠나서 마침내 말들이 하나도 없네. 지난번 편지에서 염치불구하고 성가시게 말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네. 바라건대, 15일 뒤에 말을 구해서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³⁴⁾

위의 간찰에서도 재행의 기록이 존재한다. 이 간찰은 김진하(金鎭河)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김진하의 딸이 대례를 올리고 친영을 한 이후에 사위가 처가댁에 다시 올 때의 행차에 관한 것이다. 김진하가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말은 지난번 신행 이후에 다리가 불편하였고 다른 말을 보내야 하였지만, 고을 수령이 모든 말을 끌고 나간 상황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김진하는 현재 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을 전한 것이다.

앞선 편지를 통해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행한 것을 살펴보았다. 재행은 신랑이 혼인을 위해 신부집에 처음으로 가는 초행(初行)과 신부가 시댁으로 처음 오는 신행(우귀) 사이에 사위가 신부집에 가는 것을 말한다. 김진하의 딸은 신행 절차를 빨리 행하여 시댁에서 생활하다가 근친을 할 때 신랑이 함께 가게 되어 근친과 재행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부가 다시 신부집으로 올 때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반정(半程)이라고 한다.

딸아이를 데려오는 날짜는 내년 정월 16일로 택해서 보내주어야 할 듯하니, 이 점을 양해해 주고, 미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저도 또한 16일에 경산 반야점으로 종을 보내어 반정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기한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⁵⁾

이 간찰은 1899년 12월 21일에 김면동이 사돈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이다. 김면동이 이중구 집안에 시집간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반정을 하고 있다. 반정은 양쪽 사돈집의 중간을 이르는 말이다.³⁶⁾ 의례적으로 신랑댁에서 서로 간의 중간 지점까지 행차하면, 신부댁이 중간 지점부터 그 행차를 받아서 돌아오는 방식이다. 김면동이 당시 살고 있던 곳은 창원으로 창원에서 경주 양동마을의 중간 지점은 경산(慶山) 반야점(半野店)이었다.

앞선 편지를 통해 신행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혼인 이후 신행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기록된 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4) 앞의 책, D367, “再行禮也, 自我送歸, 舉世同行之事, 而家豈自貴中還後, 蹇氣漸甚, 萬無更送之道, 而本倖奉板輿由歸, 馬群遂空, 頃書之冒沒煩告, 良以此也, 望須以望後求馬, 以枉如何”

35) 앞의 책, H360, “女阿率來日字, 似來正既望日擇送, 以此諒下, 預爲拱處, 如何. 鄙亦既望日送隸於慶山半野店半程措處矣. 諒之無違期, 如何. 切仰叩叩.”

36) 반정(半程)의 혼례 용어로 주로 재행(再行)과 관계가 깊다. 재행은 신랑이나 신부가 다시 신랑댁이나 신부댁에 인사를 드리러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간의 중간 지점에서 서로의 행차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반정에 대한 기록은 문서에는 잘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서는 반정이라는 용어를 여러 간찰에서 볼 수 있다. 이 반정을 통해 당시에 혼례의 절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족종이 감히 살아서 혼인을 올릴 아들을 데리고 가니, 마음이 황홀하여 괴로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례를 따라서 4일 신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시는 길이 가까운 것은 그저 매우 다행입니다. 신행 때는 온갖 물건들로 풍성하게 차려놓아야 하는데, 비록 맛있는 술과 안주가 없더라도 그나마 제 얼굴을 보고 편의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³⁷⁾

위의 간찰은 족종(族從) 이능윤(李能允, 1850~1930)이 족숙에게 아들의 신행 소식을 전한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이능윤은 고례의 예절에 따라 4일 신행을 행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례는 『가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즉 친영을 말한다. 친영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뒤 그날로 대례를 올리고, 다음날에 현고구례를 올린다. 이능윤은 신부집과의 거리로 인한 것인지 고례대로 행하지 못하고 4일째 되던 날에 신행을 했다.

앞선 편지를 통해 이능윤은 고례와 근사하게 신행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 외에도 한 달 뒤 신행을 한 기록도 존재한다.

- ① 저는 지난달 27일에 상(象) 아이의 혼례를 올리고, 지난달 10일에 또 신행을 했으니, 이른바 두 번 큰 행사를 치릅니다.³⁸⁾
- ② 신행의 날짜를 귀중에서 보내왔지만, 저희 근처 창빈 대방가에게 물어보니, 크게 이로운 날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길하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12월이 크게 이롭고 지금 27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비록 몹시 추운 시기에 가깝지만, 길일을 맞추어 적절하게 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날로 양해해서 결정하고, 더는 당기거나 늦추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³⁹⁾

위의 앞선 편지 ①은 1934년 12월 24일에 이석범(李錫範)이 이석일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이석범은 자신이 한 달 안에 혼례를 치르고 신행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뒤의 편지 ②는 1899년 9월 20일에 김규화가 이중구와 손녀의 신행일을 조율하는 내용이다. 먼저 이중구가 신행일을 김규화 쪽에 알려 왔고, 김규화는 제시한 날이 길일이 아니라며 다른 날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신행일을 확정 지으려고 하였다. 이석일이 혼인을 올린 시기는 10월 15일 이후에서 12월 사이로, 혼인일과 신행일의 차이는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2. 세속적 규정의 탈피 현상

근대 시기에는 세속적 규정에 대한 탈피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37) 앞의 책, G143, “族從敢生帶醮而去, 悅不知惱, 然欲倣古禮, 爲四日新行, 路近第一幸. 所謂新行, 百物騰翔, 雖無旨酒佳肴, 聊以因便謀面爲望.”

38) 앞의 책, C348, “從弟前月廿七日, 過象兒醮禮, 今月初旬, 又過新行, 所謂兩番大事.”

39) 앞의 책, D265, “于歸日, 貴中所送, 問于鄰近滄賓大方家, 則非但非大利日字, 大不吉云. 蜡月是大利, 而今旬七日爲吉云, 雖迫歲寒極, 從吉切當. 以是諒定, 而更不爲進退, 如何如何.”

신식 혼례가 도입되기 전, 까다롭고 부당한 관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형제 사이에서는 한 해에 두 번 혼례를 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친족끼리는 터울을 두고 결혼하고 형제의 경우는 한 해에 한 번만 혼인을 올리는 것이 상례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당시의 세속에서 정해진 규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 년에 형제가 두 번 혼례를 하는 것은 혹 세속에서 꺼린다. 하지만 이미 혼례를 주관하는 자가 서로 다르니, 세속에서 기피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천하의 모든 일을 대범하게 진행하면 일은 모두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몸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⁴⁰⁾

위는 1889년 김면동(金冕東)이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김면동은 한 해에 두 번 형제가 결혼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걱정하는 이중구의 마음을 달래면서 조언하고 있다. 그는 혼례의 주관자가 다르므로 한 해에 두 번 혼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중구는 아들 하나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형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혼례의 주관자는 혼인 대상자의 부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간찰에서 언급하는 형제는 직계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촌지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듯하다. 이중구는 1888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교리 벼슬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으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관례를 알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례는 육례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 절차에 의해서 혼례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혼례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경우가 있다.

저의 고을에서 어제 들어보니, 관민이 합의하여 동학교도를 친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화기(禍機)입니다. 만약 즉시 분주히 대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화란이 어떠한지 모를 것입니다. 마음이 졸리고 두려운 심정이 들어 이와 같으니, 우려되고 변민함을 어찌하겠는가. 이른바 딸의 혼인은 찬물을 떠 놓고 대강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상이 과연 혼란스러우니, 생각해도 대책이 없음을 어찌하겠습니까. 약간의 돈은 비록 내가 마련한 것이지만 이를 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온갖 물정이 이와 같으니, 어찌 세태의 변화가 아니겠는가.⁴¹⁾

위의 간찰은 발신자, 수신자, 작성일을 알 수 없는 편지이다. 이 당시 동학교도들이 활발히 활동한 시기는 1860년에서 1894년 사이이다. 이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이 운동을 탄압한 1894년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시 동학교도들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사회를 반대하고 서학과 왜를 배척하는 반외세사상을 주장

40) 앞의 책, H017, “一年兄弟兩婚, 或有俗忌云. 而已主婚相異, 何關忌俗耶? 天下萬事, 大凡行之, 則事皆就順勿爲躬慮, 如何?”

41) 앞의 책, F347, “鄙鄉則聞昨日, 官民合議, 將逐戶而起, 以伐東徒云, 此亦禍機也. 若不即時奔避, 則未知將來禍色如何. 而蹙蹙如此, 憂悶煩枯奈何. 所謂女婚, 酌水過行, 然目今文象果難矣, 思之無計奈何. 如干錢分, 雖自己所算置者, 萬無收用之道, 凡百物情如此, 豈非世變乎.”

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발신자는 동학교도의 반발로 인해 혼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혼사를 위해서 혼인 시기를 미루지 않고 간소하게 치렀다.

IV. 결 론

지금까지 경북 지역의 근대 혼례의 변화 양상을 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에 혼인 연령은 혼처를 구하는 대상을 포함하면 남자는 14.4세이고 여자는 13.3세이다. 남자는 16세부터 30세까지, 여자는 14세부터 20세에 혼인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일반적인 형태에 비해서는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혼인 연도는 혼인을 금지했던 1900년 이전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혼인이 진행되었고,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1894년에는 혼인을 간소하게 치르기도 하였다.

혼례의 내용에는 주로 서로 간의 혼담을 나누는 혼서지의 형태가 있고, 혼례에 대한 축하와 혼수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혼처를 부탁하는 내용과 혼례 일정, 혼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외에는 혼수물품을 기록한 목록이 존재하였고, 어릴 적부터 미리 정혼한 사례가 있었으며, 중매인이 제안한 혼처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례와 상·장례로 혼례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혼례의 형태는 고대 시기부터 서구의 유입으로 신식 결혼이 진행된 시기 전까지 서류부가혼의 형태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부터 친영을 주장하여 가관친영례라는 새로운 친영의 사례가 도입되었다. 조선 후기까지 가관친영례가 진행되었고, 190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고례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신행의 시기가 빨라지고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됨에 이르렀다.

앞서 살펴본 혼례 용어 중, ‘재행’과 ‘반정’의 용어 같은 경우는 혼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이다. 재행은 신랑이 신부집에 두 번째 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처음 혼인을 위해 신부집에 가는 것을 초행이라고 한다. 반정은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신행과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재행 때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 반정이 당시에 성행했던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 당시에 하나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비용적 부담이 컸다. 그러므로 양가의 집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생겨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통해서 근대에 들어 고례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외에도 세속적 규정에 대한 탈피 현상들이 종종 드러나기 시작하여 기존 형식적인 것을 변경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대는 현대와 가까운 시기로 당시의 혼례는 지금과는 다르다. 현대의 혼례는 서구 혼례의 유입으로 복장, 장소, 예식 등이 확연히 다르지만, 근대 혼례의 신행 시기의 변화와 세속적 규정 탈피는 현대 혼례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家禮』 「親迎·遂醮其子而命之迎」

『孔子家語』

『三國志』 魏書·東夷傳

『禮記』 「曲禮」

『隋書』 「東夷傳」

『태종실록』

『이중구가 5대 고문서』

권순형, 「고려시대 혼인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韓國思想史學』 56, 2017.

박용옥, 「고구려의 혼인 풍속과 평강공주의 자매(自媒)혼인과 그 역사적 성격」, 『이대사원(梨大史苑)』, 2003.

송미화, 「조선 중기 이후 영남지역 관례의 구성 체계와 그 문화적 의미 변화」,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1.

송민선, 「친영과 반친영의 문화적 숨意」, 『역사민속학』 37, 2011.

이재령, 「경주 이중구가 고문서 자료의 정리와 성과」, 『동양학』 83, 2021.

이정란, 「고려시대 혼인형태에 대한 재검토」, 『사학』 57, 2003.

장병인,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조선시대학보사』 45, 2008.

장병인,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한국사연구』 169, 2015.

한복용, 「조선시대 친영제도의 전개과정」, 『중앙법학』 9, 2007.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7일에 투고되어,
2023년 3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4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Changes of Modern Wedding in Kyeongbuk Region

- Based on Antique Documents of Lee Joong-gu's Five Generations -

Kim, Honggoo*

Our history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development and changes through endless years. Among these years, pre-modern days are transitional times connecting modern times to ancient times. In these premodern days, some parts of our culture in direct connections with our life continue to exist, while others have experienced changes.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which is cutting topknots, a symbol of classical scholars, was enforced, and coming-of-age ceremony, which is not being held anymore, was practiced for the last time.

While our culture has undergone various changes,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have remained intact. One example is wedding, the ceremony which is the closest and directly connected to our life. Pre-modern days are the last times when old-type marriage was practiced, before new-type marriage was practiced. In modern days, Western style wedding has settled, with inflow of Western cultures.

Marriage is an act of forming a family, a basic constituent unit of society in social terms, and getting acknowledged as a couple in legal terms. Wedding refers to all rituals and procedures accompanying marriage, and is the most important ceremony in lifetime to the people getting married.

In the case of modern weddings, the age for marriage was 14.4 for male and 13.3 for female, including the ones looking for a spouse. Generally, men were married between the age of 16 and 30, women 14 and 20, which is earlier than the general. In terms of marriage years, marriage was practiced all the time except one period before 1900, when marriage was prohibited, and in 1894, when the Donghak followers began to be persecuted, marriage was practiced in simple ways.

As of wedding types,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times when new-type marriage was practiced as a result of introduction of the Western culture, it was found out that Seo-ryu-boo-ga-hon (men living with wife's family) was practiced. From the mid-Chosun times, Chin-young(親迎) began to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Chinese Relations, an academic research professor

be asserted and Ga-gwan-chin-young-rye, a new type of Chin-young, was introduced. Ga-gwan-chin-young-rye(假館親迎禮) was practiced until the late Chosun, and in the early 1900's, with the spread of awareness that old manners should be followed, the period of Shin-haeng(新行) was brought forward, and the time bridegroom stayed at the bride's place began to be shortened.

[Keywords] Modern, Wedding, coming-of-age ceremony, chin-young(親迎), Shin-haeng(新行), Seo-ryu-boo-ga-hon(婿留婦家婚), Ga-gwan-chin-young-rye(假館親迎禮)

